#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金炳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52

발의연월일 : 2022. 10. 27.

발 의 자: 金炳旭·김미애·김학용

백종헌 • 윤주경 • 이명수

이인선 · 이채익 · 정희용

조은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 규칙에서 튜닝부품 인증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 동차 튜닝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 받으면 소비자는 별도의 튜닝 승인절차 없이 튜닝부품을 구매하여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 부품을 인증을 받아 부품을 판매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현행법에 튜닝인증제도와 관련된 명시적·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자동차 튜닝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의 구체적인 근 거를 마련하고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 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튜닝 부품인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등).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0조의5제3항"을 "제30조의5제3항" 및 제34조의3제3항"으로, "대체부품"을 "대체부품·튜닝부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4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4.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34조의3에 따른 튜닝부품의 인증 내용과 다른 튜닝부품을 판매한 경우

제34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4조의3(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튜닝용 부품(이하 "튜닝부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이하 "튜닝부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부품인증을 하기 위하여 튜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이하 "튜닝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경우 튜닝부품의 제조사 등은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사실을 튜닝부품에 표시할 수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의 인증기준·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지 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의4(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튜 닝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을 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 3.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품질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튜닝부품을 인증한 경우
  - 4.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5.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6.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5 7. 그 밖에 튜닝부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 전단 중 "제34조"를 "제34조, 제34조의3"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튜닝부품인증기관

제81조제16호 중 "자동차부품 및 대체부품"을 "자동차부품·대체부품 및 튜닝부품"으로 한다.

제84조제4항에 제1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4. 제34조의3에 따른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은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 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 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 지 등) ① -----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또는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제30조의5제3항 및 제34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 의3제3항-----부품의 제작사 등이 다음 각 ----대체부품·튜닝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 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1. ~ 3의3. (생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4.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 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34조의3에 따른 튜닝부품 의 인증 내용과 다른 튜닝부

#### ② (생 략)

-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 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 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 행할 수 있다.
  - 1. · 1의2. (생략)
  - 2.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

     제의 도입
  - 3.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품을	판매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세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4 4 130 (-1)	-11 1 1 4 1	

- 1.·1의2. (현행과 같음) <u><삭 제></u>
- 3. (현행과 같음)<삭 제>
- 제34조의3(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① 국토 교통부장관은 자동차 튜닝용 부품(이하 "튜닝부품"이라 한 다)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 증(이하 "튜닝부품인증"이라 한 다)을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부품 인증을 하기 위하여 튜닝에 관 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이하 "튜닝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

<신 설>

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경우 튜 닝부품의 제조사 등은 튜닝부 품인증을 받은 사실을 튜닝부 품에 표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의 인증기준·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
- 제34조의4(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튜닝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을 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 3.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 품질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 게 튜닝부품을 인증한 경우
- 4.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5.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6.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7. 그 밖에 튜닝부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 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 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 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 0조의6까지, 제31조, 제31조의2 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 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 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 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 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 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 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 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 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 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 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 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본다.

<u>제34</u>
조, 제34조의3

제72조(보고·검사) ①국토교통부 경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각 호의 자에게 그 관리 또는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수있다.

1. ~ 13. (생 략) <신 설>

14. ~ 15. (생략)

② ~ ④ (생 략)

-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7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 15의2. (생 략)
  - 16.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자동차 또는 <u>자동차</u> 부품 및 대체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 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72조(보고·검사) ①
<u>.</u>
1. ~ 13. (현행과 같음)
13의2. 튜닝부품인증기관
14. ~ 1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1조(벌칙)
1. ~ 15의2. (현행과 같음)
16
<u>자동차</u>
<u>부품·대체부품 및 튜닝부품</u> -

17. ~ 28. (생 략) 제84조(과태료) ① ~ ③ (생 제84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3의3. (생략) <신 설>

14. ~ 24. (생 략)

⑤ · ⑥ (생 략)

17. ~ 28. (현행과 같음)

같음)

1. ~ 13의3. (현행과 같음)

13의4. 제34조의3에 따른 튜닝 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14. ~ 24.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